

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규정

2021. 2. 1. 제정
<인재양성팀>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의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」(이하 “BK21 사업”이라 함) 시행에 따른 고려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함) BK21 사업의 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선정된 모든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 및 대학원혁신지원사업에 적용한다.

1. 미래인재 양성사업
2. 혁신인재 양성사업
3. 대학원 혁신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3조(사업 총괄조직) ① BK21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대학원혁신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사업계획서, 보고서 작성 및 제출
 2.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지표 관리
 3. 사업예산 집행 지원, 점검 및 관리
 4.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지원
 5. 사업 관련 구성원 의견 수렴 및 교내·외 홍보
 6. 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
 7. 환류체계를 통한 사업 개선계획 수립
 8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- ② 대학원혁신본부장(이하 “혁신본부장”이라 함)은 대학원 혁신지원사업 및 교육연구단(팀) 관리를 총괄한다.

제4조(사업 운영조직) ① 대학원혁신본부 산하의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대학원기획팀: 대학원 혁신 및 BK사업의 성과관리를 지원
2. 인재양성팀: 교육연구단의 사업기획, 교육, 연구, 산학협력, 경력개발, 국제화 등 통합지원 및 성과관리, 대학원 혁신 사업비 관리
3. 대학원혁신센터: 대학원 기관연구 및 성과관리 전담, 대학원생 실태 및 수요조사,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,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,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 관련 업무
4. 대학원행정팀: 대학원 공동교과 개발 및 각종 제도 개편

제3장 위원회 및 협의회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BK21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운영한다.

1. 대학원 혁신위원회: BK21 사업 운영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및 관리
 2. 대학원 기획위원회: BK21 사업 운영 관련 계획 수립 및 검토
 3. 대학원 평가위원회: BK21 사업 자체평가 및 성과지표 관련 심의 또는 관리
- ② 각 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임기 등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.

제6조(실무위원회) ① BK21 사업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, 실행, 관리 및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단계 BK21 사업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함)를 운영한다,
 ② 위원장은 대학원혁신본부장이 겸임하고, 위원은 사업수행 실무부서의 관리자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.
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사업수행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세부 프로그램의 사업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교육연구단(팀) 협의회) ① 교육연구단(팀)의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, 교육연구단(팀)의 수요반영을 통한 대학원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(팀)장 협의회(이하 “단(팀)장 협의회”라 함)를 운영한다.
 ② 교육연구단(팀)의 학제 간 협력 강화, 프로그램 지원 및 성과관리를 위해 4단계 BK21사업 RC(Research Coordinator) 협의회(이하 “RC 협의회”라 함)를 운영한다.
 ③ 교육연구단(팀)의 공동 프로그램 지원 및 실행을 위해 협업하고,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하여 행정 실무자로 구성된 4단계 BK21사업 행정실무자 협의회(이하 “행정실무자 협의회”라 함)를 운영한다.

제4장 성과관리 및 의견수렴

제8조(성과관리) 대학원혁신본부는 BK2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,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·감독을 한다.
 제9조(모니터링) 대학원혁신본부는 BK21 사업(대학원 혁신지원비 포함) 계획 수립,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 제10조(의견수렴) 대학원혁신본부장은 사업계획 수립, 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성원(학생, 교원, 직원)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제5장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 및 관리

제11조(회계) 사업 운영을 위한 대학원 혁신지원 국고지원금은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인재양성팀에서 관리한다.
 제12조(집행) 국고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_한국연구재단(BK21사업팀)」에 따르며,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 제13조(세부사항) 이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되,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제6장 교육연구단(팀)의 조직 및 구성

제14조(교육연구단(팀) 구성과 운영조직) ① 교육연구단(팀)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(참여교수,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, 해외학자)로 구성한다.
 ② 교육연구단(팀)의 운영조직은 단(팀)장 1인과 참여교수 및 필요한 경우 부단장 1인으로 구성한다.
 ③ 교육연구단(팀)장과 부단장은 참여교수를 겸한다.
 제15조(교육연구단(팀) 운영위원회) 각 교육연구단(팀)의 필요에 따라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

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장은 각 교육연구단(팀)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6조(교육연구단(팀)장의 자격, 임기와 변경) ① 교육연구단(팀)장은 교육연구단(팀)과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.

② 교육연구단(팀)장은 탁월한 교육, 연구 및 행정 역량을 가졌으며, 한국연구재단 이사장(이하 전문기관의 장)이 정한 교육연구단(팀)장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.

③ 교육연구단(팀)장의 임기는 BK21 사업기간(7년)을 원칙으로 하며, 교육연구단의 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회의를 거쳐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 교육연구단(팀)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④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,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교육연구단의 장이 부재 시에는 총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 명이 교육연구단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.

제7장 교육연구단(팀)의 운영 및 관리

제17조(교육연구단(팀)장의 책임과 권한) ① 교육연구단(팀)장은 교육연구단(팀)의 운영에 있어 4단계 BK21 사업 대학원혁신본부와 유기적 연계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사업 참여자(참여교수,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등)와의 연계를 통하여 교육연구단(팀)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.

② 교육연구단(팀)장은 교육연구단(팀)의 사업 운영에 대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진다.

1.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
2. 사업 참여자 구성, 예산 구성 및 성과에 따른 성과급 결정
3. 사업의 총괄 수행
4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
5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
6.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

③ 교육연구단(팀)장은 교육연구단(팀)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(팀)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. 단 구체적인 경쟁체제는 해당 교육연구단(팀)별로 정한다.

④ 교육연구단(팀)장은 해당 연구 수행기간 동안 책임수업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다. 책임수업시간,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교 「책임수업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」에 따른다.

제18조(교육연구단 부단장의 책임과 권한) ① 교육연구단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교수 중에서 부단장을 임명할 수 있고, 그 임기는 각 교육연구단별로 정한다.

② 부단장은 교육연구단장을 보좌하며 교육연구단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교육연구단장의 역할을 대신할 권한을 갖는다.

제19조(참여교수의 책임과 권한) ①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(팀)의 연구·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.

②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(팀)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소속 교육연구단(팀)장에게 건의할 권한을 갖는다.

제20조(참여교수 성과의 평가) ① 교육연구단(팀)은 자체 운영규정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참여교수의 업적을 각 교육연구단(팀)이 정하는 정기적인 주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 단, 평가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교육연구단(팀)장은 참여교수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의 평가에 근거하여 참여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 단, 그 기준은 교육연구단(팀)의 자체 운영규정에 정한다.

제21조(참여대학원생의 관리) 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·교육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은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인 참여교수에게 있다.

② 교육연구단(팀)은 자체 운영규정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·교육활동을 각 교육연구단(팀)이 정하는 정기적인 주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 단, 평가 주기는 1학기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교육연구단(팀)장은 참여대학원생들 간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2항의 평가에 따라 그 수행 결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참여대학원생이 있을 시 자체 운영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참여대학원생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22조(신진연구인력) ① 신진연구인력의 선발과 계약조건은 교육부와 대학본부의 관련 규정 범위 안에서 각 교육연구단(팀)의 자체 운영규정에 정한다.

② 교육연구단(팀)장은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제20조 제2항 혹은 제21조 제2항에 상당하는 평가 기준을 자체 운영규정에 정할 수 있다.

제23조(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) ① 교육연구단(팀)은 본 규정과 「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_한국연구재단(BK21사업팀)」을 기초로 구체적인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교육연구단(팀)장은 원활한 교육연구단(팀) 운영을 위해 혁신본부의 검토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
2.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
3.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(평가기준 포함)
4.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
5.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(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)·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
6.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

③ 교육연구단(팀) 자체 운영규정은 교육연구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4조(사업비 집행 및 관리) ① 교육연구단(팀)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사업비의 집행과 관리는 교육부의 사업 관리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본교의 「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」에서 정한 연구비 관리 규정과 「위임전결 규정」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.

③ 사업비의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 교육연구단(팀)에게 있으며, 산학협력단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각 사업단의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
제25조(준용 및 시행세칙)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 및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추가사항과 세부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